

입법예고 종법령명	경승령 개정안		
담 당	포교원 포교부 포교지원팀 (02-2011-1910)	입법예고일	2025년 2월10일 ~ 3월 1일

### 1. 개정이유 및 취지

- 중앙중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포교법 개정에 따른 목적조항을 변경함(제1조 개정).
- 나. 부서 변경에 따른 경승단 단장을 포교부장, 사무총장을 포교국장으로 변경함(제3조 제2항 개정).

### 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b>제1조(목적)</b> 이 영은 포교법 제12조 및 경찰청 예규 제53호에 의하여 경승의 자격, 임용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승의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	<b>제1조(목적)</b> 이 영은 <b>포교법 제15조</b> 및 경찰청 예규 제53호에 의하여 경승의 자격, 임용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승의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<b>제3조(경승단)</b> ① 경승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경승단을 둔다. ② 경승단 총재는 총무원장, 단장은 포교원장, 사무총장은 포교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③ ~ ④ (생략)	<b>제3조(경승단)</b> ① 경승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경승단을 둔다. ② 경승단 총재는 총무원장, 단장은 <b>포교부장</b> , 사무총장은 <b>포교국장</b> 을 당연직으로 한다. ③ ~ ④ (현행과 동일)
<b>제13조(업무소관)</b> 경승에 관한 업무 소관은 포교원 포교부로 한다.	<b>제13조(업무소관)</b> 경승에 관한 업무 소관은 <b>총무원 포교부</b> 로 한다.
<신설>	<b>부칙 &lt;불기 2569(2025).00.00 개정&gt;</b> 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